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104747(본소), 2017가합1051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현

담당변호사 김선희

피고(반소원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의상

변론 종결2018. 4. 26.

판결 선고2018. 9.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3. 24.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725,038,384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625,038,384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각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997,682,513원 및 피고 B에게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에게는 그중 697,682,5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3. 24.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들 뿐이다.

나. 망인은 2015. 1. 5.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유언장〉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유증에 대하여

- 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아파트 G호
- ② 서울 광진구 H 토지, 건물
- ③ 서울 광진구 I 토지

④ 그 외의 모든 동산 부동산

이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 단 원고는 피고 C에게 현금 300,0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유증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산정

판단의 편의를 위해,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익액

D = 당해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산정

1) 적극재산 망인 재산으로는 아래 부동산 이외에 별지 목록 6.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토지가 더 있지만, 피고들이 유류분 산정을 하면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살펴본다.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부동산) 가액이 다음과 같이 총 4,049,946,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I 대 200.7㎡(별지 목록 3항)	1,557,432,000
서울 광진구 H 대 179.5㎡(별지 목록 4항)	1,475,490,000
천안시 서북구 L 답 195㎡(별지 목록 13항)	23,497,500
남양주시 M 전 79㎡(별지 목록 5항)	24,924,500
서울시 광진구 H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별지 목록 2항)	178,602,240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아파트 G호(별지 목록 1항)	790,000,000
합계	4,049,946,240

2) 증여(원고의 특별수익) 가) 서울 광진구 I 지상 건물

(1) 피고들의 주장

서울 광진구 I 토지 위에는 원래 망인 소유 주택이 있었다. 원고는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주택을 새로 신축한 것처럼 2013. 8. 20.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는 원고가 망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3,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서울 광진구 I 대 200.7m²) 위에는 망인 소유 건물(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주택)이 있었던 사실, 위 건물은 2013년 철거되었고 원고가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5가구)을 신축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3. 8. 20. 자신 명의로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망인은 원고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지 이를 두고 망인이 '철거된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축한 건물 자체는 원고 소유이고 이를 망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건물을 신축한 재원이 망인 재산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서울 광진구 I 토지 차임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아무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2013. 8. 10.부터 2017. 9. 27.까지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 합계 246,522,280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0.부터 서울 광진구 I 토지를 연간 10,000,000원에 사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망인의 계좌에 매년 2회에 걸쳐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무상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특별수익이란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을 받았을 경우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원고가 망인 소유 서울 광진구 I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관련 차임 상당액이 '상속재산'이라거나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서울 광진구 I 토지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3. 4. 12. 위 토지를 원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N에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는 망인이 직접 돈을 대출하고 원고에게 증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2013. 4. 12. 위 토지를 원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N에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재산을 원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다. 채무자가 원고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금전 증여

(1)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08.563
2015년	106.636
2014년	104.142
2013년	103.521
2012년	102.645
2011년	101.585
2010년	100.000

(2) 을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입금 내역(수취인이 원고) 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원고가 생전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피고들의 주장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내역만으로 이를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망인 카드를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GDP 디플레이터에 따라 망인 사망시인 2016년으로 환산하면 합계 90,284,065원(= 계좌이체 59,336,643원 + 30,947,422원)이 된다.

<계좌이체 부분>

O	2010. 5. 27.	710,000	770,797	수취인 원고
2010. 11. 19.	1,200,000	1,302,756	수취인 원고	
2011. 3. 2.	1,450,000	1,549,602	수취인 원고	
2011. 6. 20.	1,200,000	1,282,429	수취인 원고	
2011. 7. 20.	1,200,000	1,282,429	수취인 원고	
2011. 8. 19.	1,200,000	1,282,429	수취인 원고	
2011. 9. 16.	1,200,000	1,282,429	수취인 원고	
2011. 10. 20.	1,200,000	1,282,429	수취인 원고	
2011. 11. 18.	1,200,000	1,282,429	수취인 원고	
2011. 12. 20.	1,200,000	1,282,429	수취인 원고	
2012. 1. 10.	1,200,000	1,269,186	수취인 원고	

O	2010. 5. 27.	710,000	770,797	수취인 원고
2013. 2. 18.	1,200,000	1,258,446	수취인 원고	
2013. 3. 19.	1,200,000	1,258,446	수취인 원고	
2013. 4. 19.	1,200,000	1,258,446	수취인 원고	
2013. 5. 20.	1,200,000	1,258,446	수취인 원고	
2013. 6. 19.	1,200,000	1,258,446	수취인 원고	
2013. 7. 19.	1,200,000	1,258,446	수취인 원고	
2013. 8. 19.	1,200,000	1,258,446	수취인 원고	
2013. 9. 24.	1,200,000	1,258,446	수취인 원고	
2014. 1. 20.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3. 21.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4. 17.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5. 20.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6. 19.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7. 18.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8. 21.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9. 19.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10. 20.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4. 11. 20.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P	2014. 12. 19.	1,200,000	1,250,942	수취인 원고
2015. 1. 20.	1,200,000	1,221,685	수취인 원고	
2015. 2. 23.	1,200,000	1,221,685	수취인 원고	
2015. 4. 20.	1,200,000	1,221,685	수취인 원고	
2015. 5. 21.	1,200,000	1,221,685	수취인 원고	
2015. 6. 19.	1,200,000	1,221,685	수취인 원고	
2015. 7. 20.	1,200,000	1,221,685	수취인 원고	
2015. 8. 21.	1,200,000	1,221,685	수취인 원고	
2016. 3. 22.	5,500,000	5,500,000	수취인 원고	
2012. 8. 24.	3,184,000	3,367,574	등록금	
2016. 3. 22.	4,220,000	4,220,000	수취인 원고	
합계	59,336,643			

<망인 카드 사용>

2012. 2. 21.	25,190,000	Q(주)	26,642,330	자동차 구입비
2012. 7. 17.	150,000	R	158,648	헬스장
2012. 12. 26.	256,600	S	271,394	손자녀 학원
2013. 6. 25.	270,000	T	283,150	손자녀 학원
2013. 7. 29.	840,370	U	881,300	자동차 관련
2014. 8. 18.	663,470	V	691,635	자동차 관련
2014. 11. 3.	600,000	W	625,471	헬스장
2015. 3. 26.	500,000	X주유소	509,035	자동차 관련
2015. 5. 25.	152,900	Q 여의도점	155,663	자동차 관련
2015. 7. 31.	715,860	Y	728,796	자동차 관련
합계	30,947,422			

(3) 원고는, 매월 지급받은 1,200,000원이 망인의 재산을 찾아주는 일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망인의 개인사업장(부동산임대)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찾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아들인 원고에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미리 받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속채무 피고들은, 망인이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임대하여 각 임차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210,000,000원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 아래 21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한다.

Z	10,000,000
AA	30,000,000
AB	10,000,000
AC보습학원	10,000,000
AD	10,000,000
AE	140,000,000
합계액	210,000,000

4) 소결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3,930,230,305원[= 적극재산 합계 4,049,946,240원 + 증여 90,284,065원 - 상속채무 210,000,000원]이 된다.

다. 유류분 침해액 산정

1) 망인이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상속하는 적극재산은 없고, 상속채무 210,0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나눈 70,000,000원만 각 피고들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순상속분(D)은 -70,000,000원이 된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 B은 725,038,384원[= 655,038,384원(= 기초재산 3,930,230,305원 × 1/6, 원 미만은 버림) - 순상속분 -70,000,000], 피고 C은 425,038,384원(= 725,038,384원 - 유언장에 따라 원고에게서 지급받을 300,000,000원)이 된다.

피고 B	3,930,230,305	각 1/6	0	-70,000,000	725,038,384
피고 C	300,000,000	425,038,384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은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가 모두 필요하다. 피고들은 유언집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6. 3. 24.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유류분 반환의무 및 피고 C에 대한 금전 지급 의무

1)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유류분 가액 반환 청구에 대해 특별히 원고가 원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다투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청구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C에게는 망인의 유증에 따라 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각 725,038,384원 및 그중 반소 당시 청구하였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9.부터, 나머지 625,038,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6.부터 각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건물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차임으로 상속 관련 제반 세금을 납부하였다. 위 건물은 원고가 단독상속하게 되므로, 그 차임은 모두 원고의 몫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그 구상채권으로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고의로 상속세 납부를 지연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금 29,014,680원을 납부하였다. 이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는 이 부분 구상채권으로도 상계한다.

2) 판단 원고가 상속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납부하였다면 그 상속세가 얼마인지, 가산세 납부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정지원

판사배인영

별지